

익선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

- 건축물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(변경)-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142호(2018.5.10.)호로 최초 결정된, 「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」 건축물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(변경)하는 사항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11월 13일

종로구청장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2. 건축물에 관한 용도 결정조서 : 변경
1) 불허용도 : 변경
■ 불허용도 결정(변경)조서

도면 표시번호	적용 구역	위치	변경사유
불허3	돈화문로 구역	1층	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 중 ·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(돈화문로 변에서 점포깊이 6m 까지 불허, 단 한옥 건축시에는 전체 허용)
		전층	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 중 · 공동주택

			·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목욕탕, 세탁소, 탁구장, 체육도장, 변전소, 도시가스배관시설, 통신용시설, 양수장, 정수장 ·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동차영업소, 총포판매소,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, 장의사, 다중생활시설, 제조업소·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리 등을 위한 시설(국악기, 공예품, 생활한복관련 제외)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 · 공연장(비디오물감상실, 비디오물소극장 제외) 및 전시장을 제외한 문화및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생활권수련시설을 제외한 수련시설, 운동시설,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숙박시설, 위락시설, 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주차장을 제외한 자동차관련시설, 교정및 군사시설, 발전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식장, 야영장시설
불허4	태화관길구역	전층	·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
			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 중 · 공동주택 ·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목욕탕, 세탁소, 탁구장, 체육도장, 변전소, 도시가스배관시설, 통신용시설, 양수장, 정수장 ·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동차영업소, 총포판매소,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, 장의사, 다중생활시설, 제조업소·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리 등을 위한 시설(국악기, 공예품, 생활한복관련 제외)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 · 공연장(비디오물감상실, 비디오물소극장 제외) 및 전시장을 제외한 문화및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생활권수련시설을 제외한 수련시설, 운동시설,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숙박시설, 위락시설, 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주차장을 제외한 자동차관련시설, 교정및 군사시설, 발전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식장, 야영장시설

■ 불허용도 결정(변경)도 : 변경 없음

■ 불허용도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불허3 불허4	· 기 존 - 불허 3 : 태화관길 구역 - 불허 4 : 돈화문로 구역 · 변 경 - 불허 3 : 돈화문로 구역 - 불허 4 : 태화관길 구역	· 도시관리계획(익선 지구단위계획) 결정조서 내 건축물 의 불허 용도 관련 정정 사항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 경을 변경한 사항으로, ·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의 돈화문로변의 계획(1층 불허 용도)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존 결정도의 내용을 따라 변경내용과 같이 결정(변경)

마. 기타 사항

○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 건축과(02-2148-28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